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39 발의연월일: 2022. 9. 13.

발 의 자:최혜영·강준현·김민기

김원이 · 김홍걸 · 서영석

신정훈 • 이은주 • 전용기

정춘숙 · 홍성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 배우자 외의 자녀, 부모 등에게는 신분요건 외에 연령 또는 장애 요건 충족을 요구함.

장애 요건 충족 기준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뿐만아니라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더 이상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장애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며, 「공무원연금법」이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등 타 법령의 심한 장애인의 수급 권 보호 강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 있음.

이에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확대하고 이를 명시하여, 법률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2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을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및 제6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를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2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제7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를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을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을 "제52조의2에 따른 장

애상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을 각각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이후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자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자는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연 행	개 성 안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① 부양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①
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	
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	
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	
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	
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	
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9세 미만이거나 <u>장애등급 2</u>	2 <u>제52</u> 조의2
급 이상인 자녀(배우자가 혼	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3. 60세 이상이거나 <u>장애등급 2</u>	3 <u>제52조의2에 따른</u>
급 이상인 부모(부 또는 모의	<u>장애상태에 있는</u>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행 혂

- 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부양가족연금액 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1. ~ 4. (생략)
- 5. 자녀가 19세가 된 때. 다만, 5.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 있는 자녀는 제외한다.
- 6.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 6.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 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7. · 8. (생략)

<신 설>

개	정	인
Z II	ĺά	i.

3	_
	-
	-

- 1. ~ 4. (현행과 같음)
-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

7. · 8. (현행과 같음)

-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 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 제52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 1.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 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 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

현행	게 정 안
	<u>라</u>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	
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	
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	
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	
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	
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	
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	
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2
<u>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u> 만 해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당한다.	<u>있는 사람</u>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3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u>장애</u>	<u>제52</u>
<u>등급 2급 이상인 자</u> 만 해당한	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
	ı

개 혂 행 정 아 다. 는 사람----.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 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한다. 있는 <u>사람</u>----.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5.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 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당한다. 있는 사람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u>제5</u>2조의2에 따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른 장애상태-----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 (1) -----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

현 행	개 정 안
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	
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	
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1. <u>장애등급이 2급 이상</u> 인 경우	1. <u>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u> -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2
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u>장</u>	
<u>애등급 2급 이상</u> 인 자녀의 생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 -
계를 유지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	⑦
가 <u>장애등급 2급 이상</u> 에 해당	<u>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u> -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	
의 지급을 정지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8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질병이	
나 부상이 악화되어 <u>장애등급</u>	제52조의2에 따른
<u>2급 이상</u> 에 해당하게 된 경우	<u>장애상태</u>
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u>장</u>	<u>ম</u>
<u>애등급 2급 이상</u> 에 해당하게	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

현 행	개 정 안
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	
다.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